

제 출 서 류

	필수 서류	비고	체크
1	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신청서	작성	
2	서약서	작성	
3	소득재산신고서(가구원 전체/ 30세 미만 미혼은 부모 가구까지) ○ 신고 내용과 조사후 실제 소득재산이 달라질 수 있음 ○ 온라인 신청서 재산(부채)만 입력	작성 소득재산 자료 직접준비	
4	임대차계약서 ○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(주의)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 : ①,② 중 택1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+등기부등본 ○ 기숙사 - 입실확인서+기숙사비 납입증명서 ○ 고시원 - 입실확인서+임대인 사업자등록증+월세이체확인증	본인지참 등기부등본 →무인민원발급기	
5	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증빙서류 ○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확인증 제출 (보낸사람, 받는사람 예금주명, 거래일시, 거래금액 등 명시 필수) ※ 발급방법: 은행어플 메뉴검색 - 이체확인/송금확인/이체결과확인 검색 ○ 월세 이체내역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(1회 이상) 제출	은행발급 은행어플	
6	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○ 은행어플로 발급한 이미지 사본 가능 ○ 계좌주 성명(임차인과 동일해야함), 계좌번호, 은행직인 보이게	본인지참 은행어플	
7	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(신규 추가) ○ 종류무관,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○ 계좌주 성명(임차인과 동일해야함)	본인지참 은행어플	
8	가족관계증명서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○ 청년이 미혼인 경우(3): 청년 본인&친부&친모 ○ 청년이 기혼인 경우(6): 청년 본인&친부&친모 청년의 배우자&배우자의 부&모 *발급: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	정부24 동사무소 구청 시청	
필요시			
	(위임신청서)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직접방문이 어려울시, 가급적 온라인신청(복지로) 이용	작성 도장,신분증	
	(임차보증금/주택 마련 용도 부채 존재시)부채 증빙 서류 ○ 이외 용도(신용대출, 학자금대출 등) 부채 반영 안됨	본인지참	
	(전대차계약서) 건축물대장·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	본인지참	

※ 제외대상 : ▲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▲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▲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(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,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 ▲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▲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다만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 ▲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 등